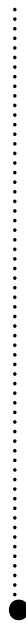



의정활동보고서



제287회 임시회(2016. 8. 23 ~ 9. 1)



경 상 북 도 의 회

개 회 사

존경하는 3백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김관용 도지사님과 이영우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올여름 내내 폭염이 기승을 부렸지만 이제 아침저녁으로
신선한 바람도 불고 낮 시간도 제법 짧아진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이 절기상 처서로 가을의 문턱에서 제
287회 임시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
니다.

아울러 비회기 중에도 일본 방위백서 독도 영유권 주장
규탄 성명서 발표, 성주군 사드배치 문제의 현장방문, 미래
창조연구회 세미나 개최, 하반기 상임위원회 구성에 따른
연찬회 등 도정과 민생 현장을 살피는 데 적극적인 의정
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무더위 속에서도 폭염대책, 내년도 국비예산 확보, 을지연습, 도민안전사고 예방, 학교폭력 근절 등 도정과 교육발전을 위해 수고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께도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여러분, 오늘은 10대 후반기 원 구성 후 첫 본회의입니다. 그동안 전반기 의회를 가장 역동적으로 이끌어주신 장대진 의장님을 비롯한 의장단, 상임위원장 등 여러 의원님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후반기 의회는 60명 전 도의원이 새로운 각오와 열정으로 3백만 도민에게 힘이 되는 의회, 정성을 다하는 의회, 일하는 의회상 정립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최근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 속에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이 19개월째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고 있고, 기업체의 가동률이 떨어져 고용불안과 서민경제도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또한 포항의 철강산업과 구미의 전자산업이 글로벌 경기 불황과 후발국의 추격 등으로 지역경제도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때일 수록 집행부는 어려움에 처한 우리 경제의 지역발전을 위해 미래 신산업을 발굴·육성하고 3백만 도민의 염원과 기대 속에 출범한 신도청시대에 걸맞게 도청신도시 조기 활성화와 신도청을 중심으로 한 한반도 허리경제권 구축, 대구공항 통합 이전에 따른 최적 입지 선정, 농어업 FTA 등 현안사업 추진에 슬기롭게 대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추석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동료의원님들과 공직자들이 지혜를 모아 도민 모두가 편안한 명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물가안정대책과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 사회복지시설과 근로현장 방문 등을 통해 민생을 세심하게 살피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이번 회기에는 예결특위, 윤리특위 등 특별

위원회 구성의 건을 비롯하여 조례안 등 여러 가지 안건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이번 임시회가 10대 후반기 의회의 출발을 알리는 만큼
도민에게 힘이 되고 희망과 신뢰를 심어주는 소중한 회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과 3백만 도민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8월 23일

경상북도의회 의장 김 응 규

차 례

I. 개	황		25
II. 의사일정			26
III. 의안처리			32
IV. 민원처리			33
V. 본회의 보고사항			35
VI. 5분 자유발언			40
□ 홍진규 의원(건설소방위원회)			40
□ 나기보 의원(농수산위원회)			44
□ 이흥희 의원(기획경제위원회)			47
□ 김창규 의원(기획경제위원회)			51

부 록

☐ 조례안(9건).....	59
☐ 동의안(1건).....	121
☐ 건의안(1건).....	123
☐ 결의안(6건).....	126

I. 개 황

경상북도의회 제287회 임시회는 2016년 8월 23일 14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9월 1일까지 10일간의 회기동안 2차의 본회의와 2회에 걸친 상임위원회 및 6회의 특별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임시회의 본회의 내용을 개관해 보면, 제1차 본회의는 8월 23일(화) 14시에 개의하여 일반사항 보고를 마친 후,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홍진규 의원 등 4명의 의원들의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제287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 의원 선임의 건』, 『상임위원회 위원 변경선임의 건』, 『휴회의 건』 등 안건을 처리하였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1일(목) 11시에 개의하여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등 총 30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예결특위, 윤리특위 등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등 여러 가지 안건을 처리하고 폐회하였다.

끝으로 이번 임시회가 10대 후반기 의회의 출발을 알리는 만큼 60명 전 도의원이 새로운 각오와 열정으로 3백만 도민에게 힘이 되는 의회, 정성을 다하는 의회, 일하는 의회상 정립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는 소중한 회기가 되었다.

다음 회기는 제288회 임시회로 2016년 9월 23일 14시에 개의를 약속하고 산회를 선포하였다.

II. 의사일정

1. 소 집

가. 집회구분 : 임시회

나. 소집근거 : 지방자치법 제45조

다. 집회일시 : 2016년 8월 23일(화) 14:00

2. 회 기

가. 회의기간 : 2016년 8월 23일 ~ 9월 1일(10일간)

나. 개의횟수

○ 본회의 : 2회(누계 49회)

○ 위원회

(단위 : 회)

구 분	계	의회 운영	기획 경제	행정 보건 복지	문화 환경	농수산	건설 소방	교육	특 위	
									예결	기타
금 회	8	1	-	-	-	-	1	-	1	5
누 계	249	21	31	33	26	25	27	25	39	22

※ 누계는 제10대 의회 개의횟수

3. 활 동

가. 본회의

개 의 일 시	심 의 안 건	비 고
8. 23(화) 14:10 (제1차)	☐ 5분 자유발언 ○ 홍진규 의원(건설소방위원회) ○ 나기보 의원(농수산위원회) ○ 이흥희 의원(기획경제위원회) ○ 김창규 의원(기획경제위원회) ☐ 안건처리 ○ 제287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상임위원회 위원 변경 선임의 건 ○ 휴회의 건	
9. 1(목) 11:00 (제2차)	☐ 안건처리 ○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단법인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경상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 경상북도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조례안 ○ 경상북도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안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농축수산물 법 적용 대상 제외 건의안	

개 의 일 시	심 의 안 건	비 고
	○ 경상북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 2016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 원자력안전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 독도수호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 대구공항이전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원자력안전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독도수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대구공항이전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보고 ○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보고 ○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보고 ○ 원자력안전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보고 ○ 독도수호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보고 ○ 대구공항이전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보고 ○ 정책연구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보고	

나. 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개 의 일 시	심 의 안 건	비 고
8. 23(화) 15:45 (제1차)	☐ 안전처리 ○ 제288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협의의 건 ○ 2016년도 업무보고의 건(의회사무처 소관)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 원자력안전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 독도수호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 대구공항이전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건설소방위원회〉

개 의 일 시	심 의 안 건	비 고
8. 25(목) 10:10 (제1차)	☐ 안전처리 ○ 주요업무보고의 건(소방본부, 도청신도시본부, 지역균형건설국, 도민안전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 의 일 시	심 의 안 건	비 고
9. 1(목) 14:10 (제1차)	☐ 안건처리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 위원장(홍진규) 인사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 부위원장(박용선) 인사	

〈윤리특별위원회〉

개 의 일 시	심 의 안 건	비 고
9. 1(목) 13:00 (제1차)	☐ 안건처리 ○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 위원장(박문하) 인사 ○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 부위원장(안희영) 인사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

개 의 일 시	심 의 안 건	비 고
9. 1(목) 13:00 (제1차)	☐ 안건처리 ○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 위원장(이상구) 인사 ○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 부위원장(이홍희) 인사	

〈원자력안전특별위원회〉

개 의 일 시	심 의 안 건	비 고
9. 1(목) 13:15 (제1차)	☐ 안건처리 ○ 원자력안전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 위원장(장용훈) 인사 ○ 원자력안전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 부위원장(황재철) 인사	

〈독도수호특별위원회〉

개 의 일 시	심 의 안 건	비 고
9. 1(목) 13:40 (제1차)	☐ 안건처리 ○ 독도수호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 위원장(남진복) 인사 ○ 독도수호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 부위원장(김종영) 인사	

〈대구공항이전특별위원회〉

개 의 일 시	심 의 안 건	비 고
9. 1(목) 13:20 (제1차)	☐ 안건처리 ○ 대구공항이전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 위원장(김수문) 인사 ○ 대구공항이전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 부위원장(이수경) 인사	

Ⅲ. 의안처리

제10대 의회 의안처리 현황

(단위 : 건)

구 분		접 수 (부의)	처 리 (가+나+다)	의 결					철회 (나)	보류 (다)	비고
				계 (가)	가 결		부 결	폐 안			
					원 안	수 정					
계		30 (420)	30 (420)	28 (413)	28 (361)	0 (50)	0 (2)		0 (5)	2 (2)	
조 례 안	소 계	11 (261)	11 (261)	9 (255)	9 (220)	9 (33)	0 (2)		0 (5)	2 (1)	
	의 회 제 안	6 (134)	6 (134)	4 (130)	4 (111)	0 (19)			0 (3)	2 (1)	
	도지사 제 출	5 (83)	5 (83)	5 (83)	5 (74)	0 (9)					
	교육감 제 출	0 (44)	0 (44)	0 (42)	0 (35)	0 (5)	0 (2)		0 (2)		
규 칙 안		0 (2)	0 (2)	0 (2)	0 (2)						
예산·결산		0 (22)	0 (22)	0 (22)	0 (11)	0 (11)					
동의·승인		1 (29)	1 (29)	1 (28)	1 (20)	0 (8)				0 (1)	
건 의 안		1 (1)	1 (1)	1 (1)	1 (1)						
결 의 안		0 (17)	0 (17)	0 (17)	0 (17)						
기 타 안		17 (88)	17 (88)	17 (88)	17 (88)						

※ ()내는 제10대 의회 누계임.

IV. 민원처리

1. 청 원

(단위 : 건)

구 분	접 수			처 리	처리중
	계	이 월	금 회		
금 회					
누 계	3		3	3	

※ 누계는 제10대 의회 실적

2. 진 정

가. 접 수

(단위 : 건)

위원회	계	행정	사회 문화	교통	건설	교육	경제	환경	농어업	기타
계	1 (61)	(30)	(6)	(2)	1 (12)	(2)	(4)	(3)		(2)
의 회 영 향	(1)	(1)								
기 경 화 재	(2)						(2)			
행 정 보 건 보 지	(11)	(5)	(4)		(1)		(1)			
문 화 교 류	(8)	(5)	(2)					(1)		
농 수 산	(3)	(2)					(1)			
건 소 설 방	1 (27)	(11)		(2)	1 (11)			(2)		(1)
교 육	(8)	(5)				(2)				(1)
특 위 원 회	(1)	(1)								

※ ()내는 제10대 의회 실적

나. 처 리

(단위 : 건)

위 원 회	처 리					처리중
	계	처 리	불수리	취 하	타기관 이 송	
계	(60)	(59)	(1)			1
의회운영	(1)	(1)				
기획경제	(2)	(2)				
행 정 보건복지	(11)	(11)				
문화환경	(8)	(8)				1
농 수 산	(3)	(3)				
건설소방	(26)	(25)	(1)			1
교 육	(8)	(8)				
특별위원회	(1)	(1)				

※ ()내는 제10대 의회 실적

V. 본회의 보고사항

1. 의안접수 : 17건(조례안 9, 동의안 1,
건의안 1, 결의안 6)

2. 처리안건 : 17건

○ 가결 17건 - 조례안 9, 동의안 1,
건의안 1, 결의안 6

3. 조례안 : 9건

1.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도지사, 2016. 8. 12)
2.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 2016. 8. 12)
3.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 2016. 8. 12)
4. 재단법인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도지사, 2016. 8. 12)
5. 경상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황이주 의원 외 1인, 2016. 8. 12)
6. 경상북도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김창규 의원 외 2인, 2016. 8. 12)

7. 경상북도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조례안
(도기욱 의원 외 10인, 2016. 8. 12)
8. 경상북도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안
(김위한 의원 외 9인, 2016. 8. 12)
9. 경상북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교육감, 2016. 8. 12)

4. 동의안 : 1건

1. 2016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교육감, 2016. 8. 12)

5. 건의안 : 1건

1.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농축수산물 법적용 대상 제외 건의안

6. 기타안 : 6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2.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3.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4. 원자력안전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5. 독도수호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6. 대구공항 이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7. 의안 접수 내용 : 17건(조례안 9<의원 4, 도지사 5>,
동의안 1, 결의안 6, 건의안 1)

연번	제출(발의)자 (접 수 일)	안 건 명	소 관 상임위원회	비 고
1	도지사 (2016.8.12)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기획경제 위 원 회	원안가결 (2016.8.25)
2	"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2016.8.25)
3	"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2016.8.25)
4	"	재단법인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2016.8.25)
5	"	경상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2016.8.25)
6	황이주 의원 외 1인 (2016.8.12)	경상북도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문화환경 위 원 회	원안가결 (2016.8.25)
7	김창규 의원 외 2인 (2016.8.12)	경상북도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조례안		원안가결 (2016.8.25)
8	도기욱 의원 외 10인 (2016.8.12)	경상북도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안		원안가결 (2016.8.25)
9	김위한 의원 외 9인 (2016.8.12)	경상북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교 육 위 원 회	원안가결 (2016.8.29)
10	교육감 (2016.8.12)	2016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원안가결 (2016.8.29)

연번	제출(발의)자 (접 수 일)	안 건 명	소 관 상임위원회	비고
11	의회운영위원회 (2016. 8. 2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운 영 위원회	
12	"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13	"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14	"	원자력안전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15	"	독도수호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16	"	대구공항 이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17	농수산위원회 (2016.8.25)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농축수산물 법적용 대상 제외 건의안	농수산 위원회	

8. 조례 공포 사항 : 20건

이송일	이송처	안 건 명	공포일
'16. 6. 24	경상북도 지 사	경상북도 건강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2016.7.11 (제3790호)
"	"	경상북도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2016.7.11 (제3791호)
"	"	경상북도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2016.7.11 (제3792호)
"	"	경상북도 장사시설 설치·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2016.7.11 (제3793호)
"	"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2016.7.11 (제3794호)

이송일	이송처	안 건 명	공포일
'16. 6. 24	경상북도 지사	경상북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2016.7.11 (제3795호)
"	"	경상북도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2016.7.11 (제3796호)
"	"	경상북도 외래생물 관리 조례	2016.7.11 (제3797호)
"	"	경상북도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조례	2016.7.11 (제3798호)
"	"	경상북도 국외소재문화재 환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2016.7.11 (제3799호)
"	"	경상북도 순환골재 등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2016.7.11 (제3800호)
"	"	경상북도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2016.7.11 (제3801호)
"	"	경상북도 문화상조례 일부개정조례	2016.7.11 (제3802호)
"	"	경상북도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	2016.7.11 (제3803호)
"	"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2016.7.11 (제3804호)
"	"	경상북도 농수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6.7.11 (제3805호)
"	"	경상북도 전통 소싸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6.7.11 (제3806호)
"	"	경상북도 가축위생시험소 축산물 검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2016.7.11 (제3807호)
"	"	경상북도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2016.7.11 (제3808호)
"	"	경상북도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	2016.7.11 (제3809호)

VI. 5분 자유발언

□ 2016년 8월 23일 제28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 홍진규 의원(건설소방위원회) ◎

《 대구공항 통합이전에 따른 경상북도의 대응방안 》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군위군 출신 홍진규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응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최근 대구광역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구공항 통합 이전과 관련하여 우리 도의 부적절한 대응을 엄중히 비판하면서, 경상북도 3백만 도민의 심각한 정보왜곡과 알권리가 침해받지 않도록 도지사의 입장과 그에 따른 강경한 대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K-2 이전은 그동안 전투기 소음과 고도제한 등으로 고통 받아 온 주민들의 열망이자 지역 최대 숙원사업이라며 권영진 대구 시장뿐만 아니라 총선·대선 등 각종 선거 때마다 대구시민들이 요구하는 단골 공약이었습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 이번 대구시가 국방부에 제출한 K-2 이전 건의서의 목적은 그동안 대구시가 기술적으로나 주민 보상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었던 전투기 소음은 경상북도로 내보내고, 대구공항 및 그 주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따른 개발 이익은 대구시가 얻겠다는 속셈으로 생각됩니다.

대구시는 언론을 앞세워서 마치 K-2와 대구공항이 경상북도에 들어서기만 하면 인구증가, 세수증대, 고용창출 등 지역발전 효과가 대단한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3백만 도민은 이렇게들 말을 합니다. “그렇게 좋은 대구공항 저거가 하지 왜 경상북도로 보내노?”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우리 도는 대구공항 통합이전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득과 실을 숨김없이 도민에게 알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구시는 지난 18일 국방부로부터 K-2 이전건의서가 적정 판결을 받자마자 “정부 T/F 3차 회의에서 확정된 대구공항 통합 이전 방식과 추진일정에 맞추어서 연말까지 이전 후보지를 선정하는 등 대구공항 통합이전 사업을 신속히 추진할 예정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언론보도를 접하면서 지금 이 나라가 지방 자치를 시행하는 나라가 맞는지, 경상북도는 어쩌다가 대구의 일개 구청보다 못한 지위에 놓이게 되었는가 하는 한탄과 함께 자존심 상하고 불쾌한 마음을 억누르면서 다음과 같이 입장표명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첫째, 정부 T/F 회의에 참석치도 못하고 확정된 대구공항 통합 이전 방식과 추진일정에 우리 도는 동의를 하는가? 대구시와 정부는 언론을 통해서 이전 후보지로 경상북도를 지칭하면서도 우리 도와는 어떠한 실무협의나 회의정보조차도 듣지 못했다고 했는데 사실을 밝히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국방부는 경상북도와 다시 협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대구시의 K-2 이전은 국가안보 및 방위전략상의 문제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대구시민 숙원사업 해결의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전투기 소음은 우리 경상북도 도민들도 똑같이 고통을 겪게 됩니다. 이전 후보지와 그 주변은 소음공해와 개발제한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재산가치 하락이 이전지원비로 거론되는 3,000억보다 훨씬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대한 면밀한 대책을 세워서 대구공항 개발이익이 대구시민보다는 이전 후보지의 우리 도민들에게 충분히 보상되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이전 후보지가 대구시 중심에서 30분 이내 거리에 위치해야 한다는 방침에 우리 도는 동의하니까? 국방부가 선정할 이전 후보지에 대해서 대구시는 시민들의 이용 편리성만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은 경상북도의 균형발전과 한반도 허리경제권을 포함한 3백만 도민의 편의를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언론에서 인구증가 효과가 최소 1만 명 이상이라고 하는데 30분 거리에서 출퇴근하지 누가 이사를 옵니까? 오히려

대구시로 우리 주민들이 빠져나가는 인구감소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넷째, 대구공항 통합이전 이후 적자를 핑계로 민간공항은 폐쇄되고 K-2만 남게 될 경우에 그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집니까? 영남권 신공항이 김해공항 확장으로 결정된 상황에서 정부는 대구~김해 간 철도·도로 등의 접근 인프라를 완비한다고 봅니다. 본 의원이 볼 때 이렇게 되면 노선이 다양한 김해신공항으로 항공 수요가 쏠리게 되어서 결국 군사공항만 경상북도에 남을 것으로 우려됩니다. 이에 대한 우리 도의 면밀한 분석과 중앙정부의 정책적 담보가 확보되어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3백만 도민의 재산과 안정된 생활을 보호하기 위해서 도지사는 조속히 대구공항 통합이전에 따른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016년 8월 23일 제28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 나기보 의원(농수산위원회) ◎

《 도내 사드 배치 관련 》

3백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김응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농수산위원회 소속 김천 출신 나기보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사드 배치 문제는 국가의 안보와 동북아 정세와 맞물린 중대한 일입니다. 그러나 국방부가 주민설명회와 주민동의절차 없는 일방적인 사드 배치 후보지 발표로 칠곡과 성주를 들끓게 하더니 김천으로 그 불뚝이 튀고 있습니다. 지난 8월 9일 국방부 관계자들이 성주골프장 현장을 답사하고, 16일 도지사께서 사드관련 국민호소문을 발표하였으며, 21일 성주사드배치철회투쟁위원회가 투쟁위원회의 표결로 제3지역 사드 배치를 받아들이기로 결정하고, 뒤이어 성주군수가 22일 기자회견을 열어 사드 배치 반대 입장을 바꾸어 국방부에 제3후보지 검토를 공식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해당 지역 지자체와 긴밀하게 협조하면서 6개 부지가용성 평가기준을 적용해 빠른 시일 내에 현재 성주 지역 내 제3후보지를 평가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보면서 성주골프장으로의 후보지 변경을 위한 예정된 수순을 밟고 있지 않는가에 대한 걱정과 우려를 떨칠 수가 없습니다. 성주군과 성주사드배치철회투쟁위원회가 특정한 장소를 추천하지는 않았지만 제3후보지로는 김천과 인접한 성주골프장이 유력한 것으로 보입니다.

국방부에서 제3후보지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성주군 골프장 5.5km 이내에는 김천시 남면의 월명·부상·송곡리와 농소의 노곡·연명·봉곡리 주민 2,100여 명이 살고 있으며 1만 4,000여 명이 거주하는 김천혁신도시와 불과 7km 떨어져 있어 사드 제3후보지 변경에 대한 김천시민의 우려와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김천지역 사드반대 단체들이 성주 사드의 배치 반대를 넘어 사드 전면 반대론을 펼치며 투쟁의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정부가 한반도 사드 배치 제3후보지의 선정을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고 성주골프장으로의 후보지 변경은 성주지역 주민에게는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지만 김천지역 주민에게는 마른하늘에 날벼락을 맞고 있는 일과 같습니다.

도지사께서는 지난 20일 정부와 청와대 고위관계자들을 만나 몇 가지의 대안을 놓고 사드 배치지역을 성주군 내 제3의 후보지로 변경하는 문제를 두고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지사의 제3후보지 성주골프장 변경 협의는 자칫하면 성주군민의 안위는 중요시하고 김천시민의 안위는 등한시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정부는 사드 배치 예상지역을 기습적으로 성주로 발표하여 성주군민과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더니 이제는 제3후보지 공세로 성주군민을 분열시키고 김천시민을 들끓게 하고 경북도민의 갈등을 키우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사드 배치 제3후보지 변경과 관련하여 경상북도의 분명한 입장을 밝혀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첫째, 도지사께서는 정부와 사드 배치 이전협의를 걱정했는지, 협의한 내용이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왜 제3후보지로 변경해야 하는지에 대한 납득할만한 이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사드 배치 제3후보지 선정 시에 환경영향평가·주민설명회 등 공론화 과정을 반드시 거칠 것을 요구합니다. 주민동의와 절차가 결여된 성급한 결정은 해당지역에 또 다른 논란을 불러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사드 배치 논란과 관련하여 경상북도의 원칙적인 입장이 무엇인지, 향후 어떠한 대책과 방안을 갖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성주 사드 배치 문제를 풀기 위한 도지사의 역할과 책임이 김천시민의 일상에 어떻게 다가올지 깊은 고민과 성찰을 해 주실 것을 촉구함과 동시에 주민동의가 없는 제3후보지 이전 발표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강력하게 밝히는 바입니다.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2016년 8월 23일 제28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 이흥희 의원(기획경제위원회) ◎

《 경북경제 활성화 관련 》

3백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김응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구미 출신 이흥희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지난해에 경북경제 활성화에 관한 도정질문에서 취약한 경제지표를 제시하면서 기업투자 유치, 신성장동력산업 육성을 통해 실질적인 경제 활성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1년이 지난 지금 정부의 전반적인 경기상태는 호전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급변하는 기업환경 변화에 시급하게 대처하고 미래 신성장산업 육성 등 전반적인 경북경제의 체질개선을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견지에서 본 의원은 경북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구미국가5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조기에 안착시켜야 합니다.

구미국가5산업단지 활성화는 미래먹거리산업 창출을 통해 경북 경제를 재도약시키는 매우 중요한 사업입니다. 따라서 5공단 분양권이나 자동차 및 항공부품산업단지 지정, 탄소섬유 성형 클러스터 조성을 통해 5공단을 활력화시키고 점차 활력을 잃어 가는 기존 공단도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둘째, 구미연구개발특구를 조속히 추진해야 합니다.

구미연구개발특구가 지정되면 노후화된 구미국가산업의 구조 고도화와 중소기업의 연구역량 강화로 경북경제의 체질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구미연구개발특구 지정을 통해 스마트IT, 의료융복합 기기 등 대구연구개발특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특화분야를 산업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구미연구개발특구는 기술, 창업, 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대구·경북 경제의 동반성장을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셋째, 포항신항의 조기 정착을 위해 도로철도망을 확충해야 합니다.

포항신항의 수출입 물동량 확보를 위해서는 도로철도 인프라 구축이 필수적입니다. 현재 대구경북의 수출입 물동량이 부산항에 집중되는 가장 큰 이유는 포항신항이 부산항보다 가까운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접근성이 나쁘기 때문입니다.

향후 러시아 물류루트 개편, 동북아 항만 물동량 증가, 북극 항로 대두에 대비해 포항신항이 항만물류 허브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포항신항과 구미5공단을 잇는 직송 철도망을 조기에 구축하여 김천, 구미 등 내륙공단이 안고 있는 물류비를 획기적으로 절감하고 포항신항도 활성화시켜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의 업종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기술거래 및 사업화지원센터 설치가 필요합니다. 기술 및 사업화지원센터를 통해 사장되고 있는 각종 연구기관의 신기술 및 업종대상 전환 기술, 전문인력, 관련 설비를 중계해 경영상의 어려움에 처한 중소기업의 전략업종으로의 전환을 적극 지원해야 합니다.

이미 정부에서는 공공연구기관에서 개발된 기술의 민간부문 이전과 사업화 촉진, 민간부문 개발기술이 원활히 거래되고 사업화될 수 있도록 기술이전법을 제정하였으며, 서울시는 지난해 5월 기술이전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서울시의 중소기업과 산업전반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경북도 차원에서 시급하게 기술거래 및 사업화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무너지고 있는 지역기반산업을 일으켜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LG, 삼성 등 국내 대기업은 경북지역의 중소기업을 통해 생산기술력을 확보하여 글로벌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수도권과 해외로 생산기지를 이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경북 경제는 수출감소, 중소기업 부도 등으로 총체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경북경제는 성장을 멈추느냐, 신성장동력을 확보해 새롭게 도약하느냐는 중대한 기로에 섰습니다. 본 의원은 중소기업을 위한 기술거래 및 산업화지원센터 설치, 구미5공단 조기안착, 구미연구개발특구 지정, 포항신항 활성화 등 당면현안의 조속한 해결과 신성장동력 육성을 통해서 경북경제의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의회가 도정의 각종 시책들을 감시·감독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도의회의 정책적 대안과 의견을 도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2016년 8월 23일 제28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 김창규 의원(기획경제위원회) ◎

《 학교 통폐합과 폐교 활용방안 》

존경하는 김응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저의 지역구인 칠곡 석적지역의 중학교 설립으로 어린 학생들의 타 지역 중학교 입학에 위해 생활근거지를 옮기는 등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현실에 대한 대안마련을 요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인구 3만 4천여 명의 석적지역은 초등학교 3개교와 중·고등학교 각 1개교가 있습니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대교, 장곡, 석적 등 3개 초등학교의 졸업생들을 장곡중학교 1개교에서 모두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며, 앞으로도 이러한 부분은 더욱 커질 것이라는 점입니다.

지난 2월 3개 초교 졸업생은 365명으로 이로 인해 장곡중학교는 한 학년 10개반이던 것을 11개반으로 늘려 339명의 신입생을 수용하였습니다. 그러다보니 장곡중학교에 가지 못한 학생들은 10km 이상이 떨어진 인근지역의 중학교에 진학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같은 불균형이 해가 갈수록 더 심해질 것이라는 데 있습니다. 남울택지지구가 개발되면서 2015년 아파트 1,094세대가 입주 완료하였고, 지난 7월부터 835세대가 입주 중에 있는 등 총 1,974세대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1,300세대의 단독주택단지가 현재 조성 중에 있습니다.

특히 석적지역 인구는 연평균 3.3% 증가하고 있고 주민들의 평균연령은 30.4세로 결혼과 출산적령기인 2, 30대가 석적주민의 46%를 차지하고 하면서 초등학교 취학아동의 증가와 중학생의 신입생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표 1 : 신규중학교 미 설립시 장곡중학교 학생수용 계획〉

<표 1> 신규중학교 미 설립시 장곡중학교 학생수용 계획

학년도	학생 수 및 학급 수												학급 편성 인원	교실 현황	비고
	1학년			2학년			3학년			합계					
	학생	학급	급당 인원	학생	학급	급당 인원	학생	학급	급당 인원	학생	학급	급당 인원			
2016	341	11	31.0	320	11	29.1	339	11	30.8	1,000	33	30.3	31	33	
2017	371	12	30.9	347	11	31.5	326	10	32.6	1,044	33	31.6	33	33	
2018	392	11	35.6	381	11	34.6	357	11	32.5	1,130	33	34.2	36	33	과밀학급
2019	399	11	36.3	392	11	35.6	381	11	34.6	1,172	33	35.5	37	33	과밀학급
2020	489	13	37.6	399	10	39.9	392	10	39.2	1,280	33	38.8	40	33	과밀학급 과대학교
2021	456	11	41.5	489	12	40.8	399	10	39.9	1,344	33	40.7	42	33	과밀학급 과대학교
2022	487	11	44.3	456	11	41.5	489	11	44.5	1,432	33	43.4	45	33	과밀학급 과대학교
2023	539	12	44.9	487	11	44.3	456	10	45.6	1,482	33	44.9	47	33	과밀학급 과대학교
2024	578	12	48.2	539	11	49.0	487	10	48.7	1,604	33	48.6	51	33	과밀학급 과대학교
2025	592	11	53.8	578	11	52.5	539	11	49.0	1,709	33	51.8	54	33	과밀학급 과대학교
2026	673	12	56.1	592	11	53.8	578	10	57.8	1,843	33	55.8	58	33	과밀학급 과대학교

주 : 과밀학급 - 학급당 35명 초과, 과대학교 - 1260명 초과(교육부 기준)

자료 : 교육청 자료 재가공

2

표에서 보듯 신규 중학교를 신설하지 않을 경우 현재 장곡중학교 1개교의 학생 수용 능력으로는 2018년 1학년 학생들의 과밀학급 편성이 불가피하며 2019년에는 전 학년의 과밀학급화, 2020년에는 전교생 1,280명의 과대학교가 되어 더 이상의 학생을 수용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표 2 : 장곡중학교 학군 내 학생 수 및 2016년 장곡중학교 입학정원과 비교>

<표 2> 장곡중학교 학군내 학생 수 및 2016년 장곡중학교 입학정원과 비교								
(2016. 3월 현재)								
급 별	학교명	1학년 (‘22년 입학)	2학년 (‘21년 입학)	3학년 (‘20년 입학)	4학년 (‘19년 입학)	5학년 (‘18년 입학)	6학년 (‘17년 입학)	계
초	석적초	41	16	32	23	30	22	164
	장곡초	187	168	184	149	155	150	993
	대교초	265	275	279	224	205	207	1,455
	소계	493	459	495	396	390	379	2,612
2016년 장곡중학교 입학정원(339명)과 단순비교		154명 초과	120명 초과	156명 초과	57명 초과	51명 초과	40명 초과	

자료 : 교육청 자료 재가공

또한 올해 장곡중학교 신입생 정원 339명을 기준으로 향후 초등 학교 졸업 예정인구를 단순 비교해보면 2017년 40명 초과, 2018년 51명 초과, 2020년 156명이 초과하는 등 향후 장곡중학교의 정원으로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상황이 예상됩니다.

〈사진 1 : 중학교 조기설립을 위한 주민서명 건의서〉

이러한 상황을 직시한 학부모들은 참다못해 거리로 뛰쳐나와 중학교 조기 설립을 위한 주민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으로 제가 지금 손에 들고 있는 이것이 8천여 명 이상의 주민들이 서명한 중학교 조기 설립 건의서입니다.

〈사진 2 : 칠곡 남울택지지구 내 중학교 부지〉



현재 남울택지에 중학교 부지가 조성되어 있지만 학교 신설을 위한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는 단지 신규학교 설립을 위한 최대 수가 기준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학교 신설 허가가 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장의 절실함을 외면하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학교 신설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택지 개발에 따른 인구유입이 예상되고 학생 수가 증가하는 현실을 직시 하여 2018년 이후 발생하는 과밀학급, 과대학교에 대한 선제적인 계획수립과 대안마련이 요구됩니다.

이영우 교육감과 교육청에서는 지역현실과 주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학교 신설을 위한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합니다.

양질의 교육환경을 갖추어야 할 책무가 있는 도교육청이 잘못된 교육수요 예측도 모자라 안일한 대응으로 일관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학생들의 몫이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열악한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신규 중학교 신축의 근본적 해결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며 우리 학생들이 더 이상 열악한 환경과 불평등한 조건에서 공부하지 않도록 교육감의 특단의 대책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 ☐ 조 례 안 : 9건
- ☐ 동 의 안 : 1건
- ☐ 건 의 안 : 1건
- ☐ 결 의 안 : 6건

■ 조 례 안

-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도지사, 2016. 8. 12)
-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 2016. 8. 12)
-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 2016. 8. 12)
- 재단법인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도지사, 2016. 8. 12)
- 경상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황이주 의원 외 1인, 2016. 8. 12)
- 경상북도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김창규 의원 외 2인, 2016. 8. 12)
- 경상북도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조례안
(도기욱 의원 외 10인, 2016. 8. 12)
- 경상북도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안
(김위한 의원 외 9인, 2016. 8. 12)
- 경상북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교육감, 2016. 8. 12)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김 응 규

2016년 9월 1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4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경상북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고,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등 행정능률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간위탁”이란 각종 법령 및 조례, 규칙에 규정된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사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 맡겨 그의 명의로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수탁기관”이란 도지사의 사무를 위탁받은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3. “재계약”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한 사무에 대해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제 3 조(적용범위) 위탁 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4 조(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도지사는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도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정보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무 중 국가 위임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또한, 재계약 시에도 이와 같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 중 민간위탁금으로

의회 의결을 얻은 예산에 대해서는 의회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수탁기간이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 또는 3억원 이하의 단순 집행적 사무
2. 청소, 방호, 청사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 ⑤ 제1항에 따른 도지사가 위탁하는 사무는 별표와 같다.

제 5 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① 도지사는 민간위탁사무의 수탁 기관을 선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 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 기구, 장비, 시설 및 기술 수준
2. 재정적인 부담능력
3.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여부 및 사업수행 실적
4. 수탁기관 근로자의 고용·근로조건
5. 책임능력과 공신력
6. 지역간 균형분포

②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제6조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적격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③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 6 조(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 ① 도지사는 수탁자 선정 및 위탁사업 성과평가를 위하여 경상북도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 (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다만, 심의위원회는 수탁기관의 심사·선정이 완료되면 자동 해산한다.
-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성별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야 한다.
- ③ 위원은 관계 공무원 및 해당분야 전문가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은 전체위원 수의 1/4을 넘지 않아야 한다.
- ④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⑤ 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경상북도위원회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 7 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심의대상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심의대상기관(법인·단체나 그 기관인 경우 대표자)과 친족관계인 경우
2. 위원이 심의대상기관에 심의대상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3.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의대상기관에 임원 또는 직원

으로 재직할 경우

4. 그 밖에 위원이 심의대상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심의대상기관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심의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기피여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1항이나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 8 조(협약체결) ① 도지사는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위·수탁 사무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내용은 반드시 공증을 하여야 한다.

② 협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간,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및 협약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의무이행 등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도지사는 수탁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사무위탁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 9 조(위탁기간 및 재계약) ①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재계약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재계약하고자 할 때에도 제6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0조(수탁사무의 처리) ①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처리에 있어 관련 법령과 조례를 준수하고 수탁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도지사는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③ 도지사는 수탁기관의 사무처리의 지연,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처리기준의 공정성, 수수료의 부당징수 등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를 방지할 보완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1조(지휘·감독) ① 도지사는 민간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지휘·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수탁기관의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 또는 시정시킬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을 취소 또는 정지시키고자 할 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2조(사무편람) ①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 처리기간, 처리과정, 처리기준, 구비서류, 서식 및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명시한 사무편람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의 편람을 작성한 때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3조(처리상황의 감사) ① 도지사는 민간위탁사무의 처리 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결과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운영성과의 평가) ① 도지사는 민간위탁사업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해 매년 사업별 운영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및 조례 등에 의하여 별도의 평가를 받는 경우에는 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공정성과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전문기관을 평가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위탁기간에 전반에 대하여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하여 심의위원회에 보고하고, 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5조(재위임·재위탁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행정권한을 위탁 받은 기관은 수탁권한을 다른 기관·법인·단체나 개인에게 다시 위임·위탁할 수 없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 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개별 조례 또는 경상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서 위탁된 사무는 이 조례에 의해 위탁된 것으로 본다.

제 3 조(다른 조례의 폐지) 경상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는 조례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제 4 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경상북도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본문 중 “경상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

② 경상북도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본문 중 “경상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

③ 경상북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본문 중 “경상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

④ 경상북도 고등학교 졸업자 취업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본문 중 “경상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

⑤ 경상북도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본문 중 “경상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

⑥ 경상북도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5항 본문 중 “경상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

⑦ 경상북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본문 중 “경상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

⑧ 경상북도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 본문 중 “경상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

⑨ 경상북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본문 중 “경상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

⑩ 경상북도 독거노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본문 중 “경상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

⑪ 경상북도 문화바우처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본문 중 “경상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

⑫ 경상북도 문화예술 재능나눔 활성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본문 중 “경상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

⑬ 경상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39조제1항 본문 중 “경상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

⑭ 경상북도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본문 중 “경상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

⑮ 경상북도 산업디자인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본문 중 “경상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

⑯ 경상북도 스포츠복지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본문 중 “경상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

⑪ 경상북도 약용작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본문 중 “경상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

⑫ 경상북도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본문 중 “경상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

⑬ 경상북도 영상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본문 중 “경상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

⑭ 경상북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 본문 중 “경상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

⑮ 경상북도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본문 중 “경상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

⑯ 경상북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본문 중 “경상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

㉓ 경상북도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본문 중 “경상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

㉔ 경상북도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본문 중 “경상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

㉕ 경상북도 장애인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본문 중 “경상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

㉖ 경상북도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본문 중 “경상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

㉗ 경상북도 정신건강 증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본문 중 “경상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

㉘ 경상북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본문 중 “경상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

②⑨ 경상북도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본문 중 “경상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

③⑩ 경상북도 청년 미취업자 등 중소기업 취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본문 중 “경상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

③⑪ 경상북도 치매관리 및 광역치매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 본문 중 “경상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

③⑫ 경상북도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 제4항 본문 중 “경상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

③⑬ 경상북도 친환경축산업 육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본문 중 “경상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

③④ 경상북도 해양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본문 중 “경상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

③⑤ 경상북도 행복콜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본문 중 “경상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

③⑥ 경상북도 향토뿌리기업 및 산업유산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본문 중 “경상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

③⑦ 경상북도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본문 중 “경상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

③⑧ 경상북도 협동조합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본문 중 “경상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

③⑨ 경상북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 본문 중 “경상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

④⑩ 경상북도립노인전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본문 중 “경상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

④⑪ 경상북도 건강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본문 중 “경상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

④⑫ 경상북도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본문 중 “경상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

④⑬ 경상북도 외래생물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본문 중 “경상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

④⑭ 경상북도 전통 소싸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본문 중 “경상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

제 5 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경상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경상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별표 1]

경상북도 위탁사무

소관별	위탁사무명	사무수탁자	근거법령
기업노사 지원과	1. 지방기능경기대회의 개최 2. 지방기능경기대회 입상자에 대한 상금의 지급	한국산업인력공단 경북지사장	숙련기술장려 법 제20조, 동법 제22조 및 제25조
여성가족 정책관실	1. 도청어린이집 운영	전문기관·법인·단체· 개인	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3항
	2. 여성긴급전화 1366경북센터	사회복지법인, 법률구조 법인,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목적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6
	3. 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	가정위탁지원목적 비영리법인	아동복지법 제48조
	4.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아동학대예방사업 목적 비영리법인	아동복지법 제45조
관 광 진흥과	1. 외국인관광객유치해의마케팅	관광관련 법인·단체 또는 기관	경상북도관광 진흥조례 제11조 제1호 제2호 제5호
	2. 관광홍보마케팅		
	3. 관광안내소운영		
	4. 경북관광기념품공모전		
	5. 경북관광순환테마열차운영	한국철도공사	제7호
노인호 복지과	1.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운영	비영리법인	노인복지법 제39조의5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의6

소관별	위탁사무명	사무수탁자	근거법령
노인회 복지과			경상북도 노인 학대 예방 및 학대 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조례 제5조 제2항
	2. 경상북도 독립노인전문요양병원의 관리 및 운영	의료법인, 신경과 또는 정신과 전문의로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경상북도 노인전문 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 제4조1항
장애인 복지과	1. 「경상북도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조에 의한 가. 경상북도 장애인복지관 운영 나. 경상북도 시각장애인복지관 운영 다. 경상북도 여성장애인복지관 운영	사회복지법인 또는 그 밖에 비영리 법인	사회복지사업 법 제34조 경상북도 장애인 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8조
보 건 정책과	1. 한센병관리사업	사단법인 한국한센복지 협회 대구경북지부	경상북도 한센병 관리사업 위탁 시행조례 제2조
도 시 계획과	1. 일반산업단지 관리업무에 관한 다음 권한 가.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이하 “관리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수립 및 그 집행에 관한 업무 나. 공공시설, 지원시설 및 공동 시설에 관한 계획의 수립과 그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업무	산업단지관리공단 또는 산업단지관리업무를 위탁 받기 위하여 입주기업체로 구성된 협의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5호, 제31호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소관별	위탁사무명	사무수탁자	근거법령
	다. 산업용지의 매각·임대, 그 사후관리 및 산업단지의 입주에 관한 업무 라.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을 위한 공장·지식산업센터, 그 밖의 시설의 설치와 그 매각 및 임대에 관한 업무 마.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을 위한 용수·전기·증기·가스 및 유류의 공급에 관한 업무 바. 산업용지 및 시설의 설치· 유지·보수 또는 개량에 따른 이용자로부터의 비용징수에 관한 업무 사. 산업단지구조고도화에 관한 업무 아. 입주기업에 대한 자금·기술· 인력·판로 등의 지원에 관한 업무 자. 환경친화적 산업단지의 구축 및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업무 차. 산업단지안의 시설의 경비 및 산업재해예방에 관한 업무 카. 기타 산업단지의 운영 및 입주 기업체의 생산활동지원에 필요 한 업무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
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김 응 규

2016년 9월 1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지역균형건설국”을 “건설도시국”으로 한다.

제7조제4호 중 “에너지정책, 원자력산업에 관한 사항”을 “에너지
정책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제9조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민원실 운영, 자연보호, 자원봉사에 관한 사항
제14조의 제목 “(지역균형건설국)”을 “(건설도시국)”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역균형건설국장”을 “건설도시
국장”으로 한다.

제15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호

를 제3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원자력산업에 관한 사항

제15조제7호 중 “해양·수산진흥”을 “항만물류”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호를 제5호로 한다.

제21조의 제목 “(특화작목연구소 및 시험장)”을 “(특화작목연구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성주과채류시험장·청도복숭아시험장·영양고추시험장·상주감시험장·봉화약초시험장·구미화훼시험장·풍기인삼시험장을”을 “성주참외과채류연구소·청도복숭아연구소·영양고추연구소·상주감연구소·봉화약용작물연구소·구미화훼연구소·풍기인삼연구소”로 한다.

제21조제2항 중 “특화작목연구소 및 시험장”을 “특화작목연구소”로 한다.

조례 제3573호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부칙 제2조 중 “2016년 8월 31일”을 “2017년 8월 31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 조(부서 신설·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부서 신설·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제 3 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사무가 분리 및 변경되는 부서의 명칭은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의 명칭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별표 2]

특화작목연구소의 명칭 및 위치
(제21조제2항 관련)

명 칭	위 치	비고
생 물 자 원 연 구 소	경상북도 안동시 북후면 북평로 6131	
유 기 농 업 연 구 소	경상북도 의성군 의성읍 의성사곡로 344	
성주참외과채류연구소	경상북도 성주군 대가면 참별로 1612	
청 도 복 숭 아 연 구 소	경상북도 청도군 이서면 가금구라길 186-6	
영 양 고 추 연 구 소	경상북도 영양군 영양읍 영양창수로 346	
상 주 감 연 구 소	경상북도 상주시 공성면 웅산로 1094	
봉 화 약 용 작 물 연 구 소	경상북도 봉화군 봉성면 부랭이길 81	
구 미 화 훼 연 구 소	경상북도 구미시 옥성면 선상동로 1174-7	
풍 기 인삼 연 구 소	경상북도 영주시 안정면 용주로891번길 128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실·국·본부의 설치) 도의 행정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조정실·도민안전실·창조경제산업실·일자리민생본부·자치행정국·문화관광체육국·농축산유통국·환경산림자원국·복지건강국·지역균형건설국·동해안발전본부(한시기구)·도청신도시본부(한시기구)및 소방본부를 둔다.	제5조(실·국·본부의 설치) ----- ----- ----- ----- ----- <u>건설도시국</u> ----- ----- -----.
제7조(창조경제산업실) 창조경제산업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3. (생 략) 4. <u>에너지정책, 원자력산업에 관한 사항</u> 5. (생 략)	제7조(창조경제산업실) ----- ----- 1. ~ 3. (현행과 같음) 4. <u>에너지정책에 관한 사항</u> 5. (현행과 같음)
제9조(자치행정국) 자치행정국장은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1. ~ 7. (생 략) 8. <u>민원실 운영, 자연보호, 자원봉사,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u> 9. ~ 12. (생 략)	제9조(자치행정국) ----- ----- 1. ~ 7. (현행과 같음) 8. <u>민원실 운영, 자연보호, 자원봉사에 관한 사항</u> 9. ~ 12. (현행과 같음)
제14조(<u>지역균형건설국</u>) <u>지역균형건설국</u> 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11. (생 략)	제14조(<u>건설도시국</u>) <u>건설도시국장</u> ----- ----- 1. ~ 11.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제15조(동해안발전본부) 동해안발전 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2. (생략) 3. 어촌발전 중장기 계획수립 추진, 어업소득 증대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4. 수산물 유통 종합대책 추진에 관한 사항 5. 수산시설 확충, 수산자원 보호, 어업 자원·지도에 관한 사항 6. (생략) <u><신설></u> 7. 그 밖에 동해안발전정책, <u>해양·수 산진흥</u> 및 독도정책에 관한 사항	제15조(동해안발전본부) ----- ----- 1. ~ 2. (현행과 같음) <u><삭제></u> <u><삭제></u> <u><삭제></u> 3. (현행 제6호와 같음) 4. 원자력산업에 관한 사항 5. ----- <u>항만물류</u> -----
제21조(특화작목연구소 및 시험장) ① 특화작목의 품종개량·재배방법 개선· 생리생태·저장 및 가공이용 등과 기타 소득 작물에 관한 시험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생물자원연구소·유기농업연구소· <u>성주과채류시험장·청도복숭아시험장·</u> <u>영양고추시험장·상주감시험장·봉화약초</u> <u>시험장·구미화훼시험장·풍기인삼시험</u> <u>장을 둔다.</u> ② 특화작목연구소 및 시험장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21조(특화작목연구소) ① ----- ----- ----- ----- ----- ----- <u>성주참외과채류연구소·청도복숭아</u> <u>연구소·영양고추연구소·상주감</u> <u>연구소·봉화약용작물연구소·구미화훼</u> <u>연구소·풍기인삼연구소를</u> -----. ② <u>특화작목연구소</u> ----- -----.

현행	개정안																																																						
부칙(조례 제3573호, 2014.10.27.)	부칙(조례 제3573호, 2014.10.27.)																																																						
제2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동해안발전본부의 존속기한은 2016년 8월 31일까지로 하고, 도청신도시본부의 존속기한은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 -----2017년 8월 31일----- ----- -----.																																																						
【별표1】	【별표1】																																																						
<u>특화작목연구소 및 시험장의 명칭 및 위치</u> (제21조제2항 관련)	<u>특화작목연구소의 명칭 및 위치</u> (제21조제2항 관련)																																																						
<table><tr><th>명칭</th><th>위치</th><th>비고</th></tr><tr><td>⋮</td><td>⋮</td><td></td></tr><tr><td><u>성주과채류 시험장</u></td><td>경상북도 성주군 대가면 참별로 1612</td><td></td></tr><tr><td><u>청도복숭아 시험장</u></td><td>경상북도 청도군 이서면 가금구리길 186-6</td><td></td></tr><tr><td><u>영양고추시험장</u></td><td>경상북도 영양군 영양읍 영양창수로 346</td><td></td></tr><tr><td><u>상주감시험장</u></td><td>경상북도 상주시 공성면 웅산로 1094</td><td></td></tr><tr><td><u>봉화약초시험장</u></td><td>경상북도 봉화군 봉성면 부랭이길 81</td><td></td></tr><tr><td><u>구미화훼시험장</u></td><td>경상북도 구미시 옥성면 선상동로 1174-7</td><td></td></tr><tr><td><u>풍기인삼시험장</u></td><td>경상북도 영주시 안정면 용주로 891번길 128</td><td></td></tr></table>	명칭	위치	비고	⋮	⋮		<u>성주과채류 시험장</u>	경상북도 성주군 대가면 참별로 1612		<u>청도복숭아 시험장</u>	경상북도 청도군 이서면 가금구리길 186-6		<u>영양고추시험장</u>	경상북도 영양군 영양읍 영양창수로 346		<u>상주감시험장</u>	경상북도 상주시 공성면 웅산로 1094		<u>봉화약초시험장</u>	경상북도 봉화군 봉성면 부랭이길 81		<u>구미화훼시험장</u>	경상북도 구미시 옥성면 선상동로 1174-7		<u>풍기인삼시험장</u>	경상북도 영주시 안정면 용주로 891번길 128		<table><tr><th>명칭</th><th>위치</th><th>비고</th></tr><tr><td>⋮</td><td>⋮</td><td></td></tr><tr><td><u>성주참외과채류 연구소</u></td><td>경상북도 성주군 대가면 참별로 1612</td><td></td></tr><tr><td><u>청도복숭아연구소</u></td><td>경상북도 청도군 이서면 가금구리길 186-6</td><td></td></tr><tr><td><u>영양고추연구소</u></td><td>경상북도 영양군 영양읍 영양창수로 346</td><td></td></tr><tr><td><u>상주감연구소</u></td><td>경상북도 상주시 공성면 웅산로 1094</td><td></td></tr><tr><td><u>봉화약용작물 연구소</u></td><td>경상북도 봉화군 봉성면 부랭이길 81</td><td></td></tr><tr><td><u>구미화훼연구소</u></td><td>경상북도 구미시 옥성면 선상동로 1174-7</td><td></td></tr><tr><td><u>풍기인삼연구소</u></td><td>경상북도 영주시 안정면 용주로 891번길 128</td><td></td></tr></table>	명칭	위치	비고	⋮	⋮		<u>성주참외과채류 연구소</u>	경상북도 성주군 대가면 참별로 1612		<u>청도복숭아연구소</u>	경상북도 청도군 이서면 가금구리길 186-6		<u>영양고추연구소</u>	경상북도 영양군 영양읍 영양창수로 346		<u>상주감연구소</u>	경상북도 상주시 공성면 웅산로 1094		<u>봉화약용작물 연구소</u>	경상북도 봉화군 봉성면 부랭이길 81		<u>구미화훼연구소</u>	경상북도 구미시 옥성면 선상동로 1174-7		<u>풍기인삼연구소</u>	경상북도 영주시 안정면 용주로 891번길 128	
명칭	위치	비고																																																					
⋮	⋮																																																						
<u>성주과채류 시험장</u>	경상북도 성주군 대가면 참별로 1612																																																						
<u>청도복숭아 시험장</u>	경상북도 청도군 이서면 가금구리길 186-6																																																						
<u>영양고추시험장</u>	경상북도 영양군 영양읍 영양창수로 346																																																						
<u>상주감시험장</u>	경상북도 상주시 공성면 웅산로 1094																																																						
<u>봉화약초시험장</u>	경상북도 봉화군 봉성면 부랭이길 81																																																						
<u>구미화훼시험장</u>	경상북도 구미시 옥성면 선상동로 1174-7																																																						
<u>풍기인삼시험장</u>	경상북도 영주시 안정면 용주로 891번길 128																																																						
명칭	위치	비고																																																					
⋮	⋮																																																						
<u>성주참외과채류 연구소</u>	경상북도 성주군 대가면 참별로 1612																																																						
<u>청도복숭아연구소</u>	경상북도 청도군 이서면 가금구리길 186-6																																																						
<u>영양고추연구소</u>	경상북도 영양군 영양읍 영양창수로 346																																																						
<u>상주감연구소</u>	경상북도 상주시 공성면 웅산로 1094																																																						
<u>봉화약용작물 연구소</u>	경상북도 봉화군 봉성면 부랭이길 81																																																						
<u>구미화훼연구소</u>	경상북도 구미시 옥성면 선상동로 1174-7																																																						
<u>풍기인삼연구소</u>	경상북도 영주시 안정면 용주로 891번길 128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
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김 용 규

2016년 9월 1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5,295명”을 “5,458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3,169명”을 “3,332명”으로 한다.
별표 3 및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 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개정으로 정원을 초과한 현원은 그
초과현원이 해소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
으로 본다.

[별표 3]

경상북도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단위 : 명)

직 급 별 기 관 별		합 계	본 청	의 회	직속 기관	사업소	경제자유 구 역 청
합 계		5,458	-				
정 무 직		1	-				
일 반 직	소 계	1,839	-				
	2 ~ 3급	2	1	1			
	3 급	11	10		1		
	3 ~ 4급	2	2				
	4급	82	60	7	5	9	1
	5급 이하	1,729	-				
	전문경력관	13	-				
별 정 직	소 계	15	-				
	1급상당	1	1				
	4급상당	3	1	2			
	5급상당 이하	11	-				
연 구 직	소 계	201	-				
	연구관	39			38	1	
	연구사	162	-				
지 도 직	소 계	27	-				
	지도관	10			10		
	지도사	17	-				
소 방 직	소 계	3,332	-				
	소방정	22	5		17		
	소방령 이하	3,310	-				
교 원	소 계	43	-				
	총 장	1			1		
	교 수	31			31		
	조 교	11	-				

[별표 4]

한시 정원표(제6조 관련)

기 관 별	정 원(명)		존 속 기 한	비 고
	계	내 역		
합 계	2	일반직 : 3급 2		
동해안발전본부	1	일반직 : 3급 1	2017. 8. 31	
도청신도시본부	1	일반직 : 3급 1	2016. 12. 31	

신 · 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원의 총수) 도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 <u>5,295명</u> ”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원의 총수)..... <u>5,458명</u>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소방본부·소방학교·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 <u>3,169명</u>								2. : <u>3,332명</u>							
3. ~ 4. (생략)								3. ~ 4. (현행과 같음)							
〔별표 3〕 경상북도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표 (제4조 관련) (단위 : 명)								〔별표 3〕 경상북도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표 (제4조 관련) (단위 : 명)							
직급별	기관별	합 계	본청	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경제자유구역청	직급별	기관별	합 계	본청	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경제자유구역청
	합 계	<u>5,295</u>							합 계	<u>5,458</u>					
일반직	소 계	<u>1,841</u>	-					일반직	소 계	<u>1,839</u>	-				
	2~3급	2	1	1					2~3급	2	1	1			
	3급	11	10		1				3급	11	10		1		
	3~4급	2	2						3~4급	2	2				
	4급	<u>83</u>	<u>61</u>	7	5	9	1		4급	<u>82</u>	<u>60</u>	7	5	9	1
	5급 이하	<u>1,730</u>	-						5급 이하	<u>1,729</u>	-				
	전문경력관	13	-						전문경력관	13	-				
	소 계	<u>14</u>							소 계	<u>15</u>					
별정직	1급상당	1	1					별정직	1급상당	1	1				
	4급상당	3	1	2					4급상당	3	1	2			
	5급상당 이하	<u>10</u>							5급상당 이하	<u>11</u>					
연구직	소 계	<u>200</u>						연구직	소 계	<u>201</u>					
	연구관	39			38	1			연구관	39			38	1	
	연구사	<u>161</u>							연구사	<u>162</u>					
소방직	소 계	<u>3,169</u>						소방직	소 계	<u>3,332</u>					
	소방정	21	4		17				소방정	22	5		17		
	소방평 이하	<u>3,148</u>							소방평 이하	<u>3,310</u>					
	소 계								소 계						

현행					개정안				
[별표 4] 한시 정원표(제6조 관련)					[별표 4] 한시 정원표(제6조 관련)				
기관별	정원(명)		존속기한	비고	기관별	정원(명)		존속기한	비고
	계	내역				계	내역		
합계	2	일반직 : 3급 2			합계	2	일반직 : 3급 2		
동해안 발전본부	1	일반직 : 3급 1	2016. 8. 31		동해안 발전본부	1	일반직 : 3급 1	2017. 8. 31	
도청 신도시본부	1	일반직 : 3급 1	2016. 12. 31		도청 신도시본부	1	일반직 : 3급 1	2016. 12. 31	

재단법인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김 응 규

2016년 9월 1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재단법인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 1 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 창조경제의 실현 및 확산을 위하여 「과학기술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의4제3항에 따른 전담기관으로 지정된 재단법인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행정지원 등)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재단법인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사무의 범위에서 행정지원을 하거나,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의4제4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영 제24조의4제3항에 따라 센터가 지역 내 유관 기관 등과 원활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하며,

경상북도의 창조경제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 참여
시킬 수 있다.

제 3 조(출연금 등의 지원) ① 도지사는 법 제16조의4제4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 및 사업수행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② 센터는 제1항에 따라 출연금이나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경우에는 미리 센터의 연간 운영 및 사업계획서 등을 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4 조(조사 및 감독) 도지사는 도비 출연과 관련된 업무·회계·
자산에 대하여 조사와 감독을 할 수 있으며, 보고와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조사 및 감독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센터에 그 시정을 명하거나,
출연금의 환수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 5 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김 응 규

2016년 9월 1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 3 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1년 8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7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도지사는 경제여건의 급격한 변화 등으로 상당수의 중소

기업이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계획과는 별도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한 특별자금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4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7조(기금지원 사업) ①·②생략 〈<u>신 설</u>〉 〈<u>신 설</u>〉	<u>제3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 기한은 2021년 8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u> 제7조(기금지원 사업) ①·②현행과 같음 <u>③ 도지사는 경제여건의 급격한 변화 등으로 상당수의 중소기업이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계획과는 별도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한 특별자금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u> <u>제14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u> <u>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 할 수 없다.</u> <u>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u> <u>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u>

경상북도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김 응 규

2016년 9월 1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제 1 조(목적) 이 조례는 공원·도로·녹지 등 공공시설의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기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조화로운 생활공간 구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공시설”이라 함은 도로·공원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시설로서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가 관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2. “공공조형물”이라 함은 공공시설의 조형시설물(회화·조각·공예·사진·서예 등), 환경시설물(벽화·분수대·폭포 등), 상징조형물(상징탑·기념비·상징물 등) 등을 말한다.

3. “주관부서”라 함은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 구성·운영과 현황 관리 등의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4. “건립주체”라 함은 공공조형물을 건립하고자 하는 개인, 법인, 단체 또는 공공기관을 말한다.
5. “건립 인·허가 등”이라 함은 공공조형물을 건립하기 위하여 관련법령에 따라 받아야 하는 인가·허가·승인 등을 말한다.
6. “관리부서”라 함은 공공시설의 관리 사무 또는 공공조형물의 건립 인·허가 등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실·과·사업소 등을 말한다.
7. “보수”란 공공조형물이 균열 등으로 파손되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 원상회복 및 원형보존을 위한 수리와 형상변경을 위한 수리 등을 말한다.
8. “보존처리”란 공공조형물이 미관에 있어 불량한 경우 미관 향상을 위해 필요한 제반조치를 말한다.

제 3 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규정을 따른다. 다만, 미술장식품 등 전시를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건립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 4 조(건립신청) ① 건립주체는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립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조 규정에 의하여 공공조형물을 도에 기부채납 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1. 공공조형물 건립 신청서 : 별지 제1호 서식

2. 건립계획서 : 별지 제2호 서식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채납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 5 조(비용부담) 공공조형물의 건립비용은 건립주체가 부담한다.

제 6 조(건립대상 선정기준) 공공조형물의 건립대상은 역사적 자료나 고증 등을 통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정립된 인물 또는 사실에 기반을 두어야 하며 그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난극복 및 국권수호에 대한 공헌도
2. 정치·경제·사회·문화·예술·과학기술 등의 진흥·발전에 대한 기여도
3. 대상인물이나 사실에 대한 도민의 공감도
4. 그 밖에 공공의 가치 구현을 위한 기여 등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항

제 7 조(건립위치 및 제작기준) 공공조형물의 건립위치 선정과 제작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상은 출생지·묘소·활동지역·동명 및 가로명 등과 건립대상 인물·사실과의 긴밀성
2. 공공시설 및 공공용지 주변 환경 등 경관과의 조화성
3. 공공조형물의 작품성, 조형성, 안전성 및 재료의 내구성

제 8 조(건립 부지면적) 공공조형물의 건립 부지면적은 다음 각 호의 범위내로 하되 제9조에 따른 위원회에서 관리부서장의

의견을 들어 공공조형물의 조형성 및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1. 동상 : 16제곱미터 이하
2. 기념비 : 탑형은 16제곱미터 이하, 비문형은 10제곱미터 이하
3. 그 밖에 공공조형물 : 위원회 안전별 심의기준

제 9 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도지사는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이전에 관한 사항
2. 공공조형물의 교체 및 해체에 관한 사항
3. 공공조형물의 보수 및 보존처리 등에 관한 사항

제10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위촉위원 8명과 당연직위원 3명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회의 개최 때마다 다음 각 호에 따라 도지사가 위촉하고, 해당 회의의 종료와 함께 해촉된다.

1. 위촉위원 : 지역주민 대표, 경상북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공공조형물 및 경관 분야 관련 전문가
 2. 당연직위원 : 주관부서장, 해당 관리부서장, 경관업무부서장
-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주관 부서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제11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시 개최한다.

② 회의는 회의 개최 때마다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회의에 참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경상북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위원의 의무와 관여금지) ① 위원은 성실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항의 심의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1. 위원 본인 또는 민법 제777조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

2. 위원이 위촉일 기준으로 3년 이내에 소속하였던 법인 또는 단체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

③ 제2항 각 호의 사항 외에 심의안건과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위원 스스로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④ 건립주체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 ⑤ 제2항과 제4항에 의하여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 위원은 재적위원 수의 산정에서 제외한다.

제13조(건립신청에 대한 처리) ① 제4조에 따른 건립신청서에 대한 처리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신청서를 접수한 관리부서는 건립 예정 장소의 여건과 지역 주민들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실시한 사전타당성 조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하여야 한다.
2. 주관부서는 위원회를 개최하고 심의결과를 관리부서에 통보한다.
3. 관리부서는 위원회의 심의결과 및 건립 인·허가 등의 여부를 건립주체에게 통보한다.
4. 건립주체는 공공조형물을 건립한 후 관리부서에 확인을 요청한다.
5. 관리부서는 공공조형물의 건립 현장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건립주체 및 주관부서에 통보한다.

② 공공조형물 건립 타당성 조사 의견서에는 사업의 필요성, 대상자 현황 분석(동상의 경우), 대상지 적정성, 파급효과 및 주민의견 수렴에 대한 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4조(이의신청 등) ①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라 통보받은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관리부서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한다.

② 관리부서는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위원회에 재심의를 의뢰하여야 한다.

제15조(관리) ① 관리부서장은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공공조형물을 관리하여야 한다.

1.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관리대장 작성·비치
2. 공공조형물 및 그 주변 환경의 청결 유지
3. 공공조형물의 보수와 보존처리에 필요한 조치 및 안내판 설치 등

② 관리부서장은 관할 공공시설 내 모든 공공조형물에 대해 연 1회 상태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연도 관리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관리부서장은 건립주체가 직접 관리하는 공공조형물이 보수 및 보존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공공조형물의 건립주체가 적절한 때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④ 관리부서장은 건립된 공공조형물의 이전, 교체 또는 해체 등을 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하고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제16조(공공조형물 활용 및 예산지원) 도지사는 공공조형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공공조형물의 홍보를 위한 간행물 제작
2. 공공조형물을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3. 공공조형물 관광 및 안내프로그램 운영

4. 그 밖에 공공조형물의 문화적 활용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 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건립되었거나 건립이 결정된 공공조형물은 이 조례에 따라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별지 제1호 서식]

공공조형물 건립 신청서				
신 청 자	성명(단체명)		전화번호	
	주 소		대상자와 의 관계	
건립대상자 (동상인 경우)	성명(한 자)		생년월일	
	생 존 기 간		사 망 일	
	주요업적개요			
건립대상 (기타 조형물)	명 칭			
	건 립 위 치			
	규 모			
경상북도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① 경상북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1. 건립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2. 대상자의 인적사항 및 업적(동상인 경우) 3. 건립취지 4. 기타 증빙서류				

[별지 제2호 서식]

건 립 계 획 서

1. 사 업 명

2. 사업목적

3. 사업개요

가. 기 간

나. 위 치

다. 규 모

라. 모형 또는 형태

마. 재 질

4. 작품설명

5. 제 작 자(성명, 연락처, 주요경력 등)

6. 사 업 비(조달계획 포함)

7. 사후 관리계획

[별지 제3호 서식]

(앞쪽)

공공조형물 관리대장			
명 칭		건립일자	
위 치 (공공시설명)		형 상	
구 조			
규 격			
건립주체		관리부서	
건립취지			
인물 또는 사실 소개			

(뒤쪽)

공공조형물의 위치(배치)도
공공조형물의 전면사진 (5 " × 7 ")

경상북도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조례안을 이에 의결
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김 응 규

2016년 9월 1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조례안

제 1 조(목적) 이 조례는 도민이 일상생활 속에서 인문정신문화를 계승·발전시키고, 인문학적 소양을 갖춘 창의적인 도민으로 성장하기 위한 다양한 인문학적 기회와 인문강좌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문”이란 인간과 인간의 근원문제 및 인간의 사상과 문화를 말한다.
2. “인문학”이란 인문에 관하여 탐구하는 학문으로서 언어학·문학·역사학·철학·종교학 등의 학문과 직관·체험·표현·이해·해석 등 인문학적 방법론을 수용하는 제반 학문 및 이에 기반을 둔 융복합 학문 등 관련 학문분야를 말한다.

3. “인문정신문화”란 인문에 기반을 둔 정신적인 가치를 지향하는 활동 및 유형·무형의 문화적 산물을 말한다.

제 3 조(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과 사회적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 4 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도지사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의 수립 시 인문정신문화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 5 조(인문정신문화진흥위원회 설치 등) ① 도지사는 인문학 진흥과 인문학 강좌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인문정신문화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인문학 진흥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인문학 진흥관련 정책의 연구 및 개발
3. 인문학 강좌 프로그램 개발 및 활성화
4. 그 밖에 도지사가 인문학 진흥 및 인문학 강좌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 6 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③ 당연직 위원은 문화관광체육국장과 인재개발정책관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 1. 경상북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 2. 인문학 관련 학계 교육자
 - 3. 그 밖에 인문학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가진 사람
-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제 7 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대신할 수 있다.
- 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 8 조(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 관계에 있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하며, 이 경우 위원회는 해당 위원을 제외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9 조(인문학 강좌 지원)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기관에서 인문교육이 체계적이고 연속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1.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4.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따른 기관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절차 등은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10조(인문정신문화 진흥활동 발굴) 도지사는 인문정신문화 관련 자산을 발굴하고 이의 보존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인문정신문화 향유 활동 지원) ① 도지사는 도민의 인문정신 문화 향유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및 자발적인 참여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도민에게 다양한 내용과 형태의 인문강좌 등을 제공·지원하기 위하여 인문강좌 등과 관련한 콘텐츠 또는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인문강좌 등과 관련한 콘텐츠 또는 프로그램의 개발을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지원 절차 등은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12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과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교육청 및 시·군, 관련기관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제13조(포상) 도지사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큰 공헌을 한 교육기관, 단체, 개인 등에 대하여 「경상북도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김 응 규

2016년 9월 1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안

제 1 조(목적) 이 조례는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고 물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체계적인 물 자원의 지속가능한 정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물의 재이용”이란 빗물·오수·하수처리수·폐수처리수 및 발전소 온배수를 물 재이용시설을 이용하여 처리하고, 그 처리된 물을 생활·공업·농업·조경·하천 유지 등의 용도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2. “물 재이용시설”이란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하·폐수처리수 및 온배수 재이용시설을 말한다.
3. “빗물이용시설”이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서 정한 시설 및 관리기준에 따라 빗물을 모으거나 저장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4. “중수도”란 개별시설물이나 개발사업 등으로 조성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공공하수도로 배출하지 아니하고 재이용할 수 있도록 개별적 또는 지역적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 3 조(관리계획의 수립)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물 재이용 종합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수도법」에 따른 수도정비기본계획, 「하수도법」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및 「수질 및 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리시설 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관리계획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물의 재이용 여건에 관한 사항
2. 처리수의 수요전망 및 공급목표에 관한 사항
3. 물의 재이용 시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전략
4. 물의 재이용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계획
5. 물의 재이용 홍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도지사가 물의 재이용 촉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 4 조(관계기관의 협조) 도지사는 물의 재이용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장·군수 및 공공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 5 조(실태조사 등) ①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물의 재이용시설의 현황 및 운영실태 등을 조사하여 통계 및 물의 재이용 정책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물의 재이용정책을 균형 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군수에게 물의 재이용시설의 설치·보수 등의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제 6 조(빗물이용시설의 설치권고) ① 도지사는 「건축법」 제2조에 따른 지붕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설치하는 자에게 빗물이용시설의 설치·운영을 권장할 수 있다. 다만, 법 제8조에 따라 설치하는 빗물이용시설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의 시설기준·관리기준을 따라야 한다.

제 7 조(재정지원 등) ① 도지사는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설치하거나 시장·군수의 권고에 따라 시설을 개선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에서 정한 빗물이용시설 및 중수도 의무대상 시설은 제외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재정지원할 때에는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의 설치·개선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지원요청서를 시장·군수로부터 제출받아야 한다.

제 8 조(자문·심의) 도지사는 물의 재이용 촉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경상북도 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경상북도 물산업육성협의회」로 하여금 자문·심의하게 할 수 있다.

1. 관리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물 재이용 관리정책의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도지사가 물 재이용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 9 조(시범사업 발굴) ① 도지사는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범사업을 발굴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절차 등은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10조(교육 및 홍보) 도지사는 도민들이 물 재이용 시책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1. 도내 모범 모델의 발굴 및 확산
2. 물 재이용의 중요성 교육 프로그램 마련
3. 물 재이용 시책의 홍보
4. 전문가 포럼, 관계자 워크숍 개최 등을 통한 사회적 인식 확산

제11조(평가 및 포상) ① 도지사는 매년 시·군의 물 재이용 시책의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우수 시·군에 예산의 범위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물 재이용시설의 설치 및 물 재이용 촉진 등에 기여한 자 또는 시·군에게 「경상북도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김 응 규

2016년 9월 1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 1 조(목적) 이 조례는 다자녀 가정의 자녀 교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장려정책에 부응하기 위하여 다자녀 가정의 학생 교육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자녀 학생”이란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 학생을 말한다.
2. “교육비”란 수업료, 입학금, 수익자부담경비, 입학준비물품 구입비 등으로 학교교육 활동과 입학에 소요되는 경비를 말한다.
3. “수익자부담경비”란 수업료, 입학금 외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를 말한다.

제 3 조(교육감의 책무)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다자녀 가정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사회·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 4 조(적용대상자의 범위) 이 조례는 교육감이 관할하는 다음 각 호의 학교 또는 시설에 재학 중인 다자녀 학생에게 적용한다.

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형태의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 교육시설

제 5 조(교육비의 지원) ① 교육감은 다자녀 학생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교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수업료, 입학금
 2. 입학준비물품 구입비
 3. 수익자부담경비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 ② 제1항의 교육비 중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받는 경우에는 이를 지원하지 아니한다.
- ③ 교육감은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비의 지원대상과 지원항목을 포함한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한다.
-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교육비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제 6 조(교육비 지원 중지 및 환수)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비 지원을 중지한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2. 지원대상자의 신분변동으로 지원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② 교육감은 지원대상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비 지원을 받은 때에는 지원된 교육비 상당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 7 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동 의 안

- 2016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도지사, 2016. 8. 12)

2016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김 응 규

2016년 9월 1일

1. 주요내용

□ 처분재산 3,203,337천원

- 토 지 : 24,882㎡ 2,533,466천원(2건)

- 건 물 : 3,332㎡ 607,754천원(2건)

- 공작물 : 25식 55,906천원(2건)

- 입목죽 : 175주 6,211천원(2건)

○ 폐교재산 매각 (2건)

- (구)영창중학교 (영천시) 15,826㎡ (4,787평) 2,532,791천원

- (구)춘산중학교 (의성군) 9,056㎡ (2,739평) 670,546천원

건 의 안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농축수산물 법적용 대상 제외 건의안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농축수산물 법 적용 대상 제외 건의안**

정부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명 “김영란법”)에 대한 입법예고를 마치고 오는 9월 28일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 법은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를 타파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제정취지에는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본 시행령의 주요내용은 공직사회의 부조리를 근절하기 위하여 학교 및 언론사 종사자, 공직자 등이 준수해야 할 윤리강령을 제정한 것으로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의 상한가액을 각각 3만원, 5만원, 10만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축수산물을 주고받는 것은 부정청탁의 수단이 아닌 우리의 오래된 미풍양속이며 우리나라 주요 농축수산물의 40%가량이 명절기간에 집중적으로 판매되고 있고, 특히, 과일, 한우고기, 수산물 등 시중 농축수산물 선물세트 가격이 5만원 이상이 대부분인 점을 고려할 때, 일률적인 상한가액은 농축수산물 유통시장의 현실을 반영하지 않고 지나치게 낮게 설정되었습니다.

그간 우리 농어업인들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FTA 체결에

따른 시장개방 확대와 소비패턴의 변화에 대응한 고품질·친환경 농축수산물 생산을 위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특히 경상북도는 과수와 한육우 생산에 있어 각각 전국 32%, 21.6%로 가장 많으며, 특히 사과, 복숭아 등 14개 품목에서는 전국 1위를 차지하는 등 대표적인 농도입니다.

따라서 “김영란법”이 시행될 경우 경북의 농축수산물 피해가 가장 큰 것은 자명한 사실이며, 그동안 추진해 온 친환경·고품질 농축수산물 생산을 통한 경쟁력 강화와 안전한 먹거리 대책 등 정부 농정정책의 근간을 흔들리게 할 수 있습니다.

이에 경상북도 의회는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 예정인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선물의 범위에 “농축수산물과 그 가공품”은 제외하거나, 농축수산물의 특수성과 현실을 감안하여 상한가액을 상향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 차원의 대책 마련을 강력하게 건의합니다.

2016. 9. 1.

경상북도의회 의원 일동

결 의 안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외 5개 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1. 내 용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수는 15명으로 구성하며, 「경상북도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에 의거 상임위원 중 의장 추천에 의해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한다.
- 위원의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2017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 특별위원회 보좌전문위원은 의회운영전문위원으로 한다.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1. 내 용

-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은 9명 이내로 구성 한다.
-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 특별위원회 보좌전문위원은 의회운영전문위원으로 한다.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1. 내 용

-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 위원은 9명 이내로 구성한다.
-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 특별위원회 보좌전문위원은 기획경제전문위원으로 한다.

원자력안전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1. 내 용

- “원자력안전특별위원회” 위원은 9명 이내로 구성한다.
- 위원회의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 특별위원회 보좌전문위원은 농수산전문위원으로 한다.

독도수호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1. 내 용

- “독도수호특별위원회” 위원은 9명 이내로 구성한다.
-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 특별위원회 보좌전문위원은 농수산전문위원으로 한다.

대구공항 이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1. 내 용

- “대구공항 이전 특별위원회” 위원은 9명 이내로 구성한다.
-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 특별위원회 보좌전문위원은 기획경제전문위원으로 한다.

의정 활동 보고서

(제286회 임시회, 제287회 임시회)



2016. 9. 인쇄 / 2016. 9. 발행

발행 / 경 상 북 도 의 회

편집 / 의 사 담 당 관 실

전 화 : 054-880-5165

FAX : 054-880-5169



<비매품>